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49
----------	-------

발의연월일 : 2025. 8. 7.

발 의 자 : 김선교·박덕흠·박수민
김상훈·서천호·김위상
이현승·최보윤·김성원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지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농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5항).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공하기 위하여”를 “제공하고,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등에”를 “및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식품비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u>제공하기 위하여</u>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 <u>제공하고,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 하도록</u> -----.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④ (생략)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u>등에</u>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⑤ ----- ----- ----- <u>및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식품비 등에</u>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